

청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376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종중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5번 부동산 중 1/20 지분에 관하여,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7,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9. 30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0 지분에 관하여,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6, 8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각 지목변경, 농지법의 개정,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각 2020. 9. 30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동희

별지